

행 정 자 치 부

훈계요구·통보

제 목 매몰자 탐지장비 등 소방장비 구매 부적정

기 관 명 부산광역시

훈계대상자 부산광역시 ○○소방서(전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3. 7. 10.부터 2016. 7. 10.까지 부산광역시 ○○○
○본부 ○○○○과에서 소방장비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⁵⁷⁾, 적합등록⁵⁸⁾, 잠정인증⁵⁹⁾ 등(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도록 되어 있다.

부산광역시 ○○○○본부에서는 2014. 2. 17. 경주 ○○○○○리조트 강당 붕괴로 10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당한 대형 참사가 일어나자 붕괴사고에 대

57) 적합인증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음(「전파법」 제58조의 2 제2항)

58) 적합등록 :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

59) 잠정인증 :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를 허용(「전파법」 제58조의2 제7항)

한 구조역량을 강화하고자 2016년에 【표 1】과 같이 매몰자 영상탐지기, 매몰자 음향탐지기, 매몰자 전파탐지기 등 3종 21점(471백만원)의 탐색구조장비를 도입하면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장비를 구매하였다.

【표 1】 부산광역시 ○○○○본부 탐색구조용 장비(매몰자탐색기) 구입 현황

연번	장비명	규격명(제작사)	수량	적합성평가 구분	비 고
1	매몰자 영상탐지기 60)	US/WA-vss,6mm (○○○○○○, 미국)	7	적합등록	만약, 인증받지 않은 무선기능을 가진 부품이 있는 경우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임
2		GD-APE (○○○○○○, 한국)	2	적합등록	
3	매몰자 음향탐지기 61)	LD3-mini (○○○○○○, 미국)	11	적합등록	
4	매몰자 전파탐지기 62)	CA/Rescue radar (○○○○○○ & ○○○○○○, 캐나다)	1	적합인증	무선으로 본체배터리 잔량 및 온도 확인, Wi-Fi 기능 있음

※ 자료 : 부산광역시 ○○○○본부 및 국립○○연구원 제출자료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위 장비 중 【표 1】 1번의 ○○○○○○에서 제조한 매몰자 영상탐제기와 [표 1] 3번의 ○○○○○○에서 제조한 매몰자 음향탐제기는 제원 상 무선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적합등록” 대상이며, 【표 1】 2번의 ○○○○○○에서 제조한 매몰자 영상탐제기는 같은 고시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내장 또는 장착한 기자재로 역시 “적합등록” 대상이다.

또한 【표 1】 4번의 ○○○○○○○&○○○○○○○○○에서 제조한 매몰

60) 수중 및 붕괴현장 등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현장에서 카메라 등 영상을 통해 탐색

61) 붕괴현장에서 생존자의 움직임에 의한 진동 및 소리 등에 의해 위치 탐색

62) 매몰현장에서 전파를 이용하여 생존자를 탐색

자전과탐지기는 무선으로 본체배터리 잔량 및 온도 확인이 가능하고 Wi-Fi 기능이 있어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⁶³⁾이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본부에서는 매몰자전과탐지기 등 3종 21점의 구매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관련 규정의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구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장비를 구매함으로 해당 장비들의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성⁶⁴⁾ 및 무선설비 기준⁶⁵⁾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장비를 운용중이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적합성평가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장비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함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맞는 이행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연구원 ○○○○○○○○○과-000(2017.0.0.)

64) [표 1] 1번 ~ 4번 장비 공통 적용

65) [표 1] 4번 ○○○○○○○○&○○○○○○○○○에서 제조한 매몰자 전파탐지기만 적용